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안

의안 번호	931
----------	-----

발의년월일 : 2000. 11. 28.

발 의 자 : 전 준호 의원
의
인

□ 제 안 이 유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함(안 제2조)
- 위원의 임기는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3조)
- 위원회 기능은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안산시의회의원윤리
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4조)
- 윤리심사 요구와 방법, 윤리심사안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윤리심사 요구기한, 윤리심사 회부시한, 윤리심사안 심사기일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9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 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 윤리심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사항과 위원회가 윤리심사 결과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고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여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하였을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5조(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제적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 ①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9조(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2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제정 1996. 5. 8 의회규칙 제14호
개정 1999. 7. 23 의회규칙 제23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3인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이하 "간사"라 한다) 1인씩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3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 4 조 (기능) ①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경기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경기도의회윤리실천규범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신설 99.7.23]

제 4 조의2 (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 (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99.7.23]

②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중에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99.7.23]

③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99.7.23]

④제3항의 윤리심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99.7.23]

제5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5조의2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 ①제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99.7.23]

②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심사대상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99.7.23]

③위원회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가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99.7.23]

제6조 (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7조 (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문) 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개최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 (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
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 7. 23〕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할 때에
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
다. 〔신설 99. 7. 23〕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의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1996. 5. 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